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실군 농어업인과 단체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22조)

###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내수면어업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농촌진흥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다. 기타

- 1) 입법예고(2015. 8. 5. ~ 2015. 8. 25)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관계법령 발체문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과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11. "축산업"이란 「축산법」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13. "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사료를 말한다.
14.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15.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6. "임업"이란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17.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18.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물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산물을 말한다.
19.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시험개발연구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한국농촌지도자임실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임실군4-에이치연합회, 임실군4-에이치본부)를 말한다.

23.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연구회별로 임실군농업기술 센터에 등록된 연구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분야별 지원시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분야별 지원

**제5조(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군수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자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

## 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3. 농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지원
4. 농기계 구입 및 보관시설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6.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재, 인증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비, 생산단지 육성 지원
3. 친환경농업 교육·역량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군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5.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사업
6. 우수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제9조(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공동물류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
3.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0조(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2. 식품산업의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제11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군수는 국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급변하는 영농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농업인월급제
2. 고령·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사업
2.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

**제13조(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역량강화 및 영농·영어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국내·외연수 등 지원
3.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제14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농촌지역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3.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사업

**제15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제16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어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축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통·가공·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 시설, 장비, 기자재,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 정액, 수정란, 인공수정료 등 가축 우량품종 개량·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4. 축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지원 사업
5. 사료배합첨가제, 곤포사일리지첨가제 등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업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7. 축산재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업
8.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9.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0.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1. 축사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업
12.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3. 오수개 품종의 육종 및 혈통보존에 관한 사업
14.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5. 헬퍼사업 등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6. 치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제18조(산림분야 육성지원 등)** 군수는 임업 및 산림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림, 숲가꾸기, 산림토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경관조성사업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경수, 표고, 기타 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등 산림소득사업
3. 임업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제19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 성과의 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육성사업
3.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각종행사지원(한마음대회)

5.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사업
6. 농업경영 및 농업인 정보화사업
7. 농작물 및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8.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9. 새로운 축산기술 및 가축사양관리기술 보급사업
10.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농기계 관리에 관한 사업

**제20조(시험개발연구사업)**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2.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4.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험개발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학습단체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제22조(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 비용발생요인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업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 ○ 관련조문

-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안 제5조)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안 제6조)
-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안 제7조)
- 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안 제8조)
-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안 제9조)
-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안 제10조)
- 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안 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안 제12조)
- 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안 제13조)
-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등(안 제14조)
- 도농 교류 촉진(안 제15조)
-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축산업 육성지원 등(안 제17조)
-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안 제18조)
- 농촌지도사업(안 제19조)
- 시험개발연구사업(안 제20조)
- 교육훈련사업(안 제21조)
- 학술용역(안 제22조)

## 2. 비용 추계 결과

### ○ 연간예산 : 10,370백만원(2016년 기준)

- 농정기획 복지기반마련 : 50백만원
- 114프로젝트 사업 : 20백만원

- 고소득 고추생산 기반 증대 : 1,166백만원
-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 : 1,712백만원
- 원예특작자생력 증대 : 1,566백만원
- 고품질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 1,250백만원
- 살고싶은 희망마을 조성 : 875백만원
- 축산경영 기반조성 : 535백만원
- 가축관리 전략강화 : 1,400백만원
- 치즈기획 전략강화 : 17백만원
- 산림조성 정책기능 확대 : 26백만원
- 산림소득 기반조성 : 345백만원
- 농업전문능력 향상 : 31백만원
- 농업인(학습)단체육성 : 110백만원
- 농업 새기술보급시범사업 : 371백만원
-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 676백만원
- 연구개발 및 소득작목 연구 : 200백만원
- 농기계 서비스 향상 : 20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5년 : 9,798백만원      - 2016년 : 10,370백만원
- 2017년 : 10,528백만원      - 2018년 : 10,802백만원
- 2019년 : 10,787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9,798백만원(균비 9,798,198)
- 2016년 : 10,370백만원(균비 10,370,494)
- 2017년 : 10,528백만원(균비 10,528,494)
- 2018년 : 10,802백만원(균비 10,802,494)
- 2019년 : 10,787백만원(균비 10,787,494)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군 비	9,798,198	10,370,494	10,528,494	10,802,494	10,787,494	52,287,174
세 출	9,798,198	10,370,494	10,528,494	10,802,494	10,787,494	52,287,174
농업전문경영능력구축	50,300	50,300	50,300	50,300	50,300	251,500
114프로젝트소득지원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530,350	530,350	530,350	530,350	530,350	2,651,750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전북동부권고추육성사업	46,000	436,000	436,000	436,000	436,000	1,790,000
수산자원보호관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친환경농업인전진대회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친환경농업육성	189,600	189,600	189,600	189,600	189,600	948,000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318,000	318,000	318,000	318,000	318,000	1,590,000
친환경농기계지원	673,600	673,600	673,600	673,600	673,600	3,368,000
벼육묘용상토지원	503,000	503,000	503,000	503,000	503,000	2,515,000
원예작물생산기반지원	923,524	923,524	923,524	923,524	923,524	4,617,620
과수생산활성화지원	642,550	642,550	642,550	642,550	642,550	3,212,750
특화농특산물생산판매지원	830,000	830,000	830,000	830,000	830,000	4,150,000
농특산물판촉활성화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수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톤백저울구입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농협출하약정농업인월급제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복숭아선별기반시설확충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194,000	194,000	194,000	194,000	194,000	970,000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귀농귀촌 정착 지원	523,000	523,000	523,000	523,000	523,000	2,615,000
사육기반조성사업	484,900	484,900	484,900	484,900	484,900	2,424,500
정보리생산기반확충사업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축산인한마음대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오수개육성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가축방역	61,000	61,000	61,000	61,000	61,000	305,000
가축분뇨자원화	1,259,000	1,259,000	1,259,000	1,259,000	1,259,000	6,295,000
임실치즈산업육성사업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경관유지관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조경수지원사업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5,000
산림소득사업	230,000	345,000	518,000	777,000	777,000	2,647,000
농업인전문능력배양	28,600	31,460	31,460	31,460	31,460	154,440
농업인단체육성	40,000	44,000	44,000	44,000	44,000	216,000
농업인단체 행사참여 및 한마음대회	8,500	23,500	8,500	23,500	8,500	72,500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시범사업	146,400	161,040	161,040	161,040	161,040	790,560
농작물병해충공동방제 지원사업	676,000	676,000	676,000	676,000	676,000	3,380,000
새소득기술보급 시범사업	139,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39,000
삶의질 향상 생활개선회 육성	42,170	42,170	42,170	42,170	42,170	210,850
농촌자원개발 및 체험기술보급시범사업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95,000
소형농기계특수면허취득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환경보존 폐오일 수집 및 교환 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연구개발기술보급 시범사업	41,400	50,000	50,000	50,000	50,000	241,400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신소득작목 연구 실증시험포운영		143,80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3,804
재원 조달							
의존재원	계	9,798,198	10,370,494	10,528,494	10,802,494	10,787,494	52,287,174
	국비						
	도비						
	군비	9,798,198	10,370,494	10,528,494	10,802,494	10,787,494	52,287,174
자체수입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56		
정책명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한균섭	전화번호 063-640-241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li> <li>○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li> <li>○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22조)</li> </ul>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복지과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농업정책과장 귀하</p>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 교육 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 축 산 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